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2.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3.4.26.(수)까지 우리부 (축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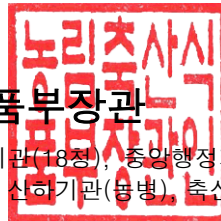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붙임 1.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18부), 중앙행정기관(5처), 중앙행정기관(18청), 중앙행정기관(2원), 중앙행정기관(7위원회), 각 시도(나 01-18), 소속기관(농을), 산하기관(농병), 산하기관(농병), 축산단체



주무관 김지은 행정사무관 김성경 축산정책과장 이정삼 전결 2023. 3. 17.

협조자

시행 축산정책과-1270 (2023. 3. 17.)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09호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92 팩스번호 044-868-9025 / kje5799@korea.kr / 대국민 공개